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
- 나. 지원대상을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정함 (안 제4조)
- 다.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정함 (안 제5조)
- 라. 교육경비로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가능 등 지원방법과 제외 근거 마련 (안 제6조)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교복비에 대한 반납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교육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2020년부터 당초예산 반영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9. 2. 18. ~ 3. 11.(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입학생 교복비 지원
- (관련조문) 제3조~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_안) 학생 1명당 350천원 범위내, 1회 지원
- (분담비율_안) 강원도교육청 50%, 도비 15%, 군비 35%
- ※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군간 지속 협의중으로 지원금액, 분담비율 변경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명, 천원 / 학생수 '18.12.31.기준)

연도별	지원대상 학생수			기관별 분담액			
	계	중학생	고등학생	계	강원도교육청 (50%)	강원도 (15%)	평창군 (35%)
2020년	567	314	253	198,450	99,225	29,768	69,457
2021년	550	305	245	192,500	96,250	28,875	67,375
2022년	588	303	285	205,800	102,900	30,870	72,030
2023년	580	275	305	203,000	101,500	30,450	71,050
2024년	540	237	303	189,000	94,500	28,350	66,150

다. 재원조달 방안 : 2020년부터 당초예산 편성

※ 지원계획 수립시 예산부서 협의 완료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연락처	(033) 330 - 202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교복지원		198,450	192,500	205,800	203,000	189,000	988,750
재원 조달		198,450	192,500	205,800	203,000	189,000	988,750
의존 재원	소 계	29,768	28,875	30,870	30,450	28,350	148,313
	보조금	29,768	28,875	30,870	30,450	28,350	148,31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9,457	67,375	72,030	71,050	66,150	346,062
	지방세	69,457	67,375	72,030	71,050	66,150	346,0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강원도교육청)		99,225	96,250	102,900	101,500	94,500	494,375